

현물기부금 가액결정 규정에 대한 소고

황규영*

〈요 약〉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하였을 때는 현금으로 제공하였을 때와는 달리 많은 세무상의 고려가 뒤따른다.

본 연구는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 그 가액의 결정에 대한 세법규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소득세법이 담고 있는 현물기부금 가액 결정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제81조 제3항)이 담고 있는 현물기부금의 가액 결정과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법의 그것과 불일치하여 세법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물기부금의 가액 결정 규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의 적격기부금 기부에 대하여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물기부금의 가액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개정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동조 동항의 개정취지는 법정기부금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현물로 기부한 법정기부금의 가액을 종전의 장부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변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기부금 항목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과 세무조정을 통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따르게 되면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시가로 하는 것보다 한도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적게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적격기부금(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하였을 때에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은 법정기부금을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세법규정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있는 현물기부금의 가액결정 규정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복식부기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현물기부금, 손금한도, 정합성, 가액평가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hwanggy@kookmin.ac.kr

I. 서 론

기부금은 반대급부를 전제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를 경우 기부금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항목으로 분류되고 원칙적으로 손비가 될 수 없다.

한편, 기부금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돕는 비영리단체 등에 자금이 제공되도록 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공익성 기부활동이 활성화되고 장려되는 것은 국가가 세금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공익기부의 활성화는 국가로서는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서 경제적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기부금 중 공익성 지출에 대하여 사업자의 손비로 인정하거나 비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세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현물로 기부한 경우 그 가액의 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이 현물기부에 대하여 개인이 기부한 경우와 법인이 기부한 경우에 각각 다르게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소득세법은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법인세법은 공익성 현물기부에 대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한편, 이 두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둘 다 공익성 기부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그렇게 규정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물기부금의 가액 결정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온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현물기부금의 가액 결정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게 된 내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소득세법 규정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형평을 고려할 때 개선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 종전보다 불리하게 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노력은 기부금에 대하여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세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자의 유형(법인과 개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선행연구와 기부금 관련 세법규정

1. 선행연구

기부금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수성·문성훈(2015), 송은주(2015)의 연구가 있다. 김수성·문성훈(2015)은 세제적인 측면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세액공제로 전환된 기부금의 조세혜택을 소득공제로 환원하거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송은주(2015)는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영향을 예측하였다.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기부금 지출시의 조세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기부금의 유의적인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기부금 지출성향과 관련된 기업특성을 연구한 연구들이 있다. 이윤상(2014)은 기부금과 조세회피 행위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 행위는 기부금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서 기부금 지출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행위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영식·위정범(2019)은 기업의 기부금 결정요인과 기업가치의 상관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의 지분율이 작을수록 기부금 지출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기부금 지출은 원칙적으로 기업가치와 관련이 없으며, 기부성향이 높은 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비슷한 연구로 김현아·황문호(2019)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기업특성이 그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명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동료기업이 있을수록 기부금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지출과 관련된 개인특성을 연구한 연구들이 있다. 박태규 외(2008)의 연구에서는 기부횟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연령, 소득, 종교, 자원봉사 경험 등이 기부횟수에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백(2010)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였으며 소득, 조세감면 혜택, 학력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기부금은 소득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보고하여 기부금의 조세혜택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송은주(2015)에 의하여 그 후에 연구된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에 해당한다. 전병욱·기은선(2018)은 기부금 지출행위가 소득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가구별 기부금 지출액이 소득의 변화에 대하여 하방경직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종교를 가진 가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기부금과 관련된 세법 규정의 불일치의 문제를 연구한 연구도 있다. 황규영(2020)의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과 소득세법 규정 간의 불일치의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를 경우 적격

기부금 상호 간에 세무조정의 연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부금과 관련된 연구는 기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기업과 개인의 기부성향과 기부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 연구는 제도적 측면을 다루는 거시적인 시각이 아닌 미시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해당 세법규정 안에 내재된 약점을 발견해 내고 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법인과 개인 간에 기부금의 조세효과가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본 연구의 노력은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높여서 법적 안정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과세규정 등의 개정 연혁

현물로 기부한 경우 그 기부가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각 세법별로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상 현물기부금 평가규정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물기부금의 평가와 관련된 규정의 문제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비교 목적상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세법에서 현물기부금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언급되어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법인세법상 현물기부금 평가규정의 개정

구 분	2006.2.9. 이전	2006.2.9. ~ 2011.3.31.	2011.3.31. 이후
법정기부금	장부가	장부가	장부가
지정기부금	시가	$Max \left[\begin{array}{l} \text{시가} \\ \text{장부가} \end{array} \right]$	장부가
비지정기부금			$Max \left[\begin{array}{l} \text{시가} \\ \text{장부가} \end{array} \right]$

<표 1>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의 경우 적격기부금(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칭)의 경우 공익성을 감안하여 현물기부 시 그 가액을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가액을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손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의 특성상 한도초과로 부인되는 불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¹⁾

1) ‘삼일아이닷컴(<http://www.samili.com.proxy.kookmin.ac.kr/tax/Jomun.asp>)’ 조문해설(법인세법시행령 제36

나. 소득세법상 현물기부금 평가규정

소득세법에서 현물기부금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소득세법상 현물기부금 평가규정의 개정

구 분	2007.2.28. 이전	2007.2.28~ 2020.2.11.	2020.2.11. 이후
법정기부금	장부가	장부가	$Max \left[\begin{array}{l} \text{시가} \\ \text{장부가} \end{array} \right]$
지정기부금	시가	$Max \left[\begin{array}{l} \text{시가} \\ \text{장부가} \end{array} \right]$	
비지정기부금			

<표 2>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정기부금의 경우 2020.2.11. 개정 전까지는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하였다가 2020.2.11. 이후부터는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인세법의 변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 즉, 법인세법의 경우 적격기부금의 가액평가를 가능하면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해왔으나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적격기부금의 가액평가를 가능하면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서에 따르면 법인세법의 개정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개정한 이유를 현물기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²⁾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정취지와 그 효과이다. 아마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소득금액을 정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포괄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에 의해서 과세소득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개정 방향이 현물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러한 개정취지가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는 이어지는 제Ⅲ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Ⅲ. 법인세법 규정의 분석

앞서 <표 1>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은 적격기부금의 경우 현물로 기부

조) 참조.

2) 『2020 개정세법 해설』(2020년 3월). 국세청. p.68의 해설 참조

한 가액의 평가를 가능한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물거래의 경우에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가액인 시가를 적용하도록 한 세법의 일반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적격기부금의 현물기부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이유는 시가를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에 있다. 기부금의 가액을 시가로 하게 되면 기부금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커지므로 손금불산입액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현물기부금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의 세무적 효과

일반적으로 물가상승기를 가정하게 되면 자산의 시가는 장부가액보다 높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물로 국가 등에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의 손비처리 금액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세무상 손비해당액만 커지게 되어 기부금의 한도초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음의 기본사례를 통하여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기본사례>

법인이 시가 ₩5,000,000, 장부가액 ₩3,000,000인 자산을 국가에 기부하였다.
기부금의 손금한도는 ₩4,000,000이라고 가정한다.

가. 현물기부금을 시가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위 기본사례에 해당하는 기부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시가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분개가 행하여질 것이다.

(차) 기 부 금	5,000,000		(대) {	자	산	3,000,000
				{	자산처분이익	2,000,000

그리고 법인이 계상한 기부금의 가액(₩5,000,000)이 세법상 손금한도(₩4,000,000)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액 ₩1,000,000을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결산상 계상된 손비금액인 ₩3,000,000(기부금 계상액에서 자산처분이익을 차감한 잔액)에서 손금불산입 ₩1,000,000을 차감한 ₩2,000,000을 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나. 현물기부금을 장부가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위 기본사례를 장부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분개가 행해질 것이다.

(차) 기 부 금	3,000,000	(대) 자 산	3,000,000
-----------	-----------	---------	-----------

이 경우 세무조정은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총액법을 따를 경우 회사가 기부한 현물은 시가로 환가하여 기부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보면 회사가 계상한 기부금(W3,000,000)은 세법상 기부가액(W5,000,000)보다 W2,000,000이 작으므로 W2,000,000을 손금산입하게 된다. 그리고 환가과정에서 발생하였을 자산처분이익 W2,000,000이 회계처리상 생략된 상태이므로 이 금액을 익금산입하게 된다. 이상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세무상 가액으로 맞추기 위한 세무조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무조정 후에 다시 기부금의 한도(W4,000,000)를 초과한 기부금액인 W1,000,000(= W5,000,000 - W4,000,000)을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결국 이 기부 건에 대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W2,000,000이 된다.

장부가로 회계처리한 위 거래를 순액법으로 세무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순액법에 따르면 장부가로 회계처리한 상태를 시가로 전환하는 세무조정은 생략하게 된다. 회계처리를 세무상 가액으로 전환하는 세무조정 시 동일한 금액(W2,000,000)을 손금산입하고 다시 익금산입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생략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부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가액인 W1,000,000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만 하게 된다. 이 방식을 따를 경우에도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는 금액은 W2,000,000이 된다.

이상의 분석에서 드러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가가 장부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현물기부금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기부한 법인이 그 거래를 시가로 회계처리 하든 장부가로 회계처리 하든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어 기부자인 법인이 불리한 세무적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2. 현물기부금을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의 세무적 효과

기본사례의 경우를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분개와 세무조정이 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법인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기 부 금	3,000,000	(대) 자 산	3,000,000
-----------	-----------	---------	-----------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다. 법인이 계상한 기부금 W3,000,000이 세무상 손금한도인 W4,000,00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물기부금을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 법인은 W3,000,000을 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3. 법인세법에서 적격 현물기부금을 장부가로 평가하는 이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인세법에서 적격기부에 대하여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부한 법인에게 세무상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위 기본사례에서 가정한 것과 반대로 시가가 장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가액인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과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가가 장부가보다 낮은 경우 시가와 차액이 먼저 손실로 계상될 것이고 이후 시가상당액이 손비인 기부금으로 계상되므로 결과적으로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과 차이가 없게 된다.

법인세법이 현물로 기부한 행위가 있을 때 그 가액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격기부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격기부행위에 대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적게 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취지는 현재의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더 확대된 것을 <표 1>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과거부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었고 2011.3.31. 이후에는 지정기부금(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의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그 혜택을 넓혀가고 있다.

IV. 소득세법 규정의 분석

소득세법에서 현물기부에 대한 가액의 평가는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장부가액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일원화하였다. 2020.2.11. 세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기부금의 경우에만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었다.

1. 현물기부금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개정된 취지와 내용

정부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된 이유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 현물기부는 기부자가 수혜자의 필요를 미리 파악하여 지정기탁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기부금 모집단체의 기부자 원 부정 사용이나 임의 배정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현물기부는 기부자가 의도한 기부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인식되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법정기부금의 현물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을 2020.2.11.에 <표 3>과 같이 개정하였다.

3) 『2020 개정세법 해설』(2020년 3월). 국세청. p.68

<표 3>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개정

종 전	개정내용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표 3>의 개정내용을 보면 법정기부금(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2. 개정한 내용의 적용 효과 분석

법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은 이미 제Ⅲ장에서 살펴보았다. 소득세법에서 사업자가 현물로 기부한 경우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기부자에게 유리하다는 입법 취지를 따른다면 법인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던 점이 개인사업자에게는 불리하게 나타나는 요소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과정과 법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법상 차이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가. 소득금액의 결정방식의 차이에 기반한 분석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소득을 측정한다. 그러므로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 순액으로 처리하는 대신 총액으로 처리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이 익금으로 산입되고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손금으로 산입된다.⁴⁾ 이러한 총액법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현물기부금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즉, 시가로 환가(판매과정을

4)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이 되며, 동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의하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이 된다.

거처 현금화한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기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앞서 제Ⅲ장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기부금의 손금한도초과액만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비하여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법규정에 따라서 측정하게 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항상 그 사건을 사업 관련 거래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과 같이 자산의 양도를 포괄적으로 익금(양도가액)과 손금(장부가액)으로 계상하지는 않고 그 거래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일 경우 그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에 따라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을 따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물기부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부금이라는 손비항목은 시가로 평가하여 많이 인정받게 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 대가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부기로 거래를 기록하게 되면 기부된 자산의 장부가액과 이에 대한 기부금처리금액의 차액이 필연적으로 처분손익으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원리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진행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행위를 원칙적으로 사업소득활동으로 보도록 2018년도부터 적용하는 소득세법에 반영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는 다음과 같다.

제19조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19. 신설)

이와 관련하여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가 개정되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 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현물로 기부한 기부금의 가액을 시가와 장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게 한 규정의 실익이 없고 오히려 기부금의 한도초과액만 더 많이 나오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개입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사업의 규모가 작고 기부금을 지출할 능력도 작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기부금의 한도초과를 걱정할 수준으로는 기부금 지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작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기부금의 한도초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과 장부가로 평가하는 것의 세무적 효과는 어떠한 것인가? 앞서 제Ⅲ장의 ‘기본사례’에서 기부금의 한도가 ₩5,000,000이라면(즉, 기부금의 한도초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Ⅲ장 제1절의 시가로 회계처리한 분개의 손익 ₩3,000,000과 제Ⅲ장 제2절의 장부가로 회계처리한 분개의 손익 ₩3,000,000이 동일하게 되어 세무적 효과는 중립적이다.⁵⁾

나. 소득세법상 기부금 한도액의 특성에 기반한 분석

소득세법에서 현물기부금의 가액을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규정이 실제 상황에서는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소득금액의 50%로 제한하는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은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가 소득금액의 100%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개인사업자가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자신의 소득금액 전부를 재원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가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시가로 평가하게 할지라도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근거로 할 때 우리는 현행 소득세법이 놓치고 있는 측면이 있음도 생각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지정기부금의 현물 기부 시에도 시가와 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현행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금만 있는 경우에는 10%)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물로 기부한 지정기부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게 될 경우 손금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시가로 기부금을 인정하는 유익은 없이 손금한도 초과액만 커지는 불이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제Ⅲ장의 논의를 참조할 것). 앞서 분석하였듯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현물기부금을 법정기부금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하는 풍조가 확대되는 현

5) 현물기부금을 시가로 평가하는 방안이 가지는 세무적 효과 즉, 기부금지출액이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한도초과액이 많이 나오는 불이익과 기부금지출액이 손금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무적으로 중립적이 되는 특성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이러한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후술하는 ‘각주 8)’의 내용과 같이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적용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한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을 감안할 경우⁶⁾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기탁하는 경우 그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V. 개선방안

이제까지 우리는 현물로 기부한 경우 그 가액의 결정을 장부가로 하는 경우와 시가(장부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장부가)로 하는 경우에 조세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현물기부금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입법취지와 다르게 조세효과가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개인이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에 조세혜택을 높여줘서 실질적으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사업자가 지출하는 현물기부금에 대한 개선

사업자 특히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현물로 기부한 것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회계처리 상 추가적인 손비의 증가가 없이 세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가액만 증가하게 되어 손금한도가 초과될 가능성을 키우는 문제가 있음을 제Ⅲ장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물기부금의 가액을 법인세법의 규정과 같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이러한 변경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는 개인사업자인 기부자에게 기부금한도초과의 가능성을 줄여주어 현물기부를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업자’라는 동일한 개념에 서서 보면 법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현물기부금 평가규정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현물기부금 평가규정이 다른 것은 법적용상의 형평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⁷⁾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모두 복식부기 기장의무자가 아닐 것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현재의 규정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6) CMB 대전방송에서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기부금 모집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대전지부의 예를 들면 2019년 기부금 모금액 중 약 35%가 현물기부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어서 현물로 기부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http://www.cmbdj.co.kr/ab-991-17015>).

7)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조세부담의 차별적 대우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초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법률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해당 입법으로 침해를 받는 사익이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건대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라면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하게 하고 이에 맞춰서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⁸⁾ 이러한 제안에 따라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내용을 <표 4>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개정안

기존의 내용	개정내용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u>법 제34조 제3항 제1호와 동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u>,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비사업자가 지출하는 현물기부금에 대한 개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가액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은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이거나

8) 기부금의 가액평가와 관련된 본 연구의 주제와는 별도로 개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에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한 대상이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양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기 보다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위 두 규정이 목적하는 바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자산양도소득을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자산양도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측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타당하다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 손익을 소득금액에 반영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해당 규정의 ‘복식부기의무자’를 ‘복식부기기장자’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변경은 기부금의 현물제공에 대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도 세법적으로 동일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동시에 획득한 개인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그 금액의 일정률만큼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특별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기부금을 결산상 장부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신 세액공제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할 경우 현물기부금의 평가액은 장부기장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기부금액이 클수록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현물로 기부하도록 장려하려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을 <표 5>와 같이 개정하면 될 것이다.⁹⁾

<표 5>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의 개정안

기존의 내용	개정내용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 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 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현물로 기부한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9) 기부금특별세액공제를 규정하는 항목이기는 하지만 본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시가와 장부가

VI.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 그 가액의 평가와 관련된 세법규정의 변화와 현행 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부는 2020.2.11.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를 개정하여 현물기부금의 가액을 시가(장부가액이 더 큰 경우 장부가액)로 평가하도록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개정의 취지를 법정기부금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표면적으로 법인세법과 상반된 것이다. 법인세법의 경우 적격기부금(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기타의 경우에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의 경우 포괄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현물기부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결산상 손비의 증가는 없는 상태에서 기부금이 손금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만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적격기부금으로 현물을 기탁한 경우에 그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소득세법은 포괄적 소득이 아닌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의하여 소득을 측정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를 감안하면 현물기부금을 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기부자에게 손비 계상의 크기를 확대하는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소득세법상 복식부기로 기장한 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동일하게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기부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손비의 추가계상은 없이 기부금이 손금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만 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불이익은 지정기부금의 경우에 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물로 기부하는 적격기부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기부하는 경우와 비사업자가 기부하는 경우를 나누어 가액평가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과 같이 적격현물기부금의 평가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가(장부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하여 기부금세액공제의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세법 간의 통일성 확보와 정합성 제고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라는 원칙을 규정한 후에 사업자의 기부금평가를 규정하는 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에서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간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본문은 현물로 제공하는 접대비와 기부금의 가액은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상위법령의 취지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단서에서 특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박물관 등에 제공하는 기부금의 경우와 같이) 입법기술 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앞서 ‘각주 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라는 기준에서 보면 과세의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도출되었다. 법률이 갖추어야 하는 통일성은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¹⁰⁾ 또한 법률이 갖추어야 하는 정합성(Kohärenz)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 가치인 ‘공익’이 인정받기 위한 형식요소의 핵심을 이룬다고 일컬어진다.¹¹⁾

10) 독일의 헌법학자 Isensee는 “공익이라는 기호 속에서 (기대)목표의 통일성·법정당성·통일성으로서의 국가라는 결사체는 인식되고 설명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갖추어야 할 공익의 속성으로서 「통일성」을 거론하였다(Isensee, J., Gemeinwohl und Staatsaufgaben im Verfassungsstaat, in ders./Paul 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II, 1988, S.57) —은승표(2012), “법의 기대목표로서의 공익” p.275에서 재인용—

11) 법률의 공익성이 인정받기 위한 형식요소로서 ‘법적 안정성’이 거론되는데, 법적 안정성은 법시스템 상호 간에 상용성(Kompatibilität)과 보완성(Ergänzung)을 가지고 통일성을 이룰 때 확보된다고 주장된다. 통일성은 개념적으로 내적 합리성을 갖는 것에 더하여 구성적으로도 합리성을 갖출 때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태가 되면 그 법률이 정합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은승표(2012) p.286참조).

참고문헌

- 김수성 · 문성훈. 20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 63-93.
- 김영식 · 위정범. 2019. “기업의 기부금 결정요인과 기업가치”. 금융연구. 제33권 제1호 : 35-68.
- 김현아 · 황문호. 2019. “명성 높은 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동료기업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6호 : 161-189.
- 박기백. 2010. “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 143-158.
- 박태규 · 윤병호 · 정진욱. 2008.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 : 79-100.
- 송은주. 2015.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4호 : 167-198.
- 은승표. 2012. “법의 기대목표로서의 공익-법의 이념과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유럽헌법연구. 제11호 : 273-314.
- 이윤상. 2014. “기부금과 조세회피 및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재무와회계정보저널. 제14권 제3호 : 103-120.
- 전병욱 · 기은선. 2018. “가구별 기부금 지출액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조세정책적 시사점”. 세무학연구. 제35권 제3호 : 157-197.
- 황규영. 202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의 개선”. 세무와회계저널. 제21권 제3호 : 9-28
- 국세청. 2020. 『2020 개정세법 해설』
- 삼일아이 홈페이지(<http://www.samili.com>)
- CMB 대전방송 기사(<http://www.cmbdj.co.kr/ab-991-17015>)
- Isensee, J. 1988. Gemeinwohl und Staatsaufgaben im Verfassungsstaat, in ders./Paul 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II, S.57

A Study on the Pricing Rule Related to In-kind Donation

Gyuyoung Hwang*

〈Abstract〉

When the donation is offered by in-kind, more tax considerations are requested rather than the case of cash don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tax revision history about the pricing of in-kind donation.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weakness of the current individual tax provision about the pricing of in-kind donation.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individual tax provision about pricing of in-kind donation (enforcement article 81 section 3) is different from the corporate tax. Besides this inequity, current provision of individual tax is unfavorable for double entry business operator with regarding to qualified donation.

This result is in discorded with the purpose of revision on individual tax enforcement article 81 section 3. National Tax Service explains that they revise the provision from pricing by the book value to pricing by market value in order to encourage donation by in-kind. The donation amount(the deduction is restricted by tax law) is generally decided according to the process of bookkeeping by double entry and tax reconciliation. In this case, the in-kind donation is less unfavorable when it is priced by the book value than by the marker value. For that reason, the corporate tax law states that qualified donation in-kind must be appraised by the book value.

However, current individual tax law(enforcement article 81 section 3) states that qualified donation in-kind must be appraised by the market value(if the book value is higher than the market value, then take the book value). Accordingly, the individual business operator would face an unfavorable situation than the corporate business operator in case of that they donate by in-kind.

Therefore to remedy this problem and to improve the equity and coherence of the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individual tax law(enforcement article 81 section 3) with the same contents of the corporate tax. In addition to this proposal, it is necessary to praise the donation in-kind by the marker value when the donation is executed by the non business operator.

〈Key words〉 in-kind donation, tax deduction limit, consistency, pricing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hwanggy@kookmin.ac.kr